

성과연봉시행세칙

[제목개정 2009.4.28.]

제정 2007.12.24
개정 2009.04.28
개정 2012.02.08
개정 2013.01.16
개정 2013.04.23
개정 2013.08.13
개정 2014.01.21
개정 2014.12.1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연봉제규정 제15조 성과연봉 (이하 “성과금” 이라 한다.)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4.28.>

제2조(적용범위)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.

제 2 장 지급대상과 지급방법

제3조(지급대상) ① 성과금 지급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(이하 “지급기준일” 이라 한다.) 현재 지급대상 기간 (전년도 1년간) 중 4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과 상근직을 지급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09.4.28., 2013.4.23., 2014.1.21., 2014.12.10.>

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,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,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. 단, 인사규정 제38조 제2항에 해당되는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10.>

③ 지급대상 기간 중 휴직(육아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 제외), 휴가(출산전후휴가 및 공무상 병가 제외), 직위해제, 대기발령(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), 신규임용 등으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4개월 미만인 자 및 교육훈련(연수)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12.10.>

제4조(지급단위) ① 전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직급별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팀을 통합하거나, 사업부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등급) ① 성과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“별표1” 과 같이 정한다. <개정 2013.4.23.>

② 이사장은 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을 5%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80%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지급단위기관내의 계급(또는 직위)별로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.

1.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지급등급별 인원 합계가 현원을 초과 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

고,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.

제6조(지급기준액) 성과금의 기준액은 직급별 월 평균연봉의 125%로 한다.

제7조(평가방법) ① 개인별 지급등급은 인사규정 제32조(근무평정)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에 의하여 결정하되, 반영비율은 상임이사가 정한다. 다만, 상임이사는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3.1.16., 2013.4.23.>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재단의 성과평가결과(예: 팀별 목표달성도 평정점)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.16.>

③ 이사장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등 별도의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.

제8조(다면평가) 삭제 <2013.1.16.>

제9조(순위명부 작성) ①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금 지급 단위별로 계급별 성과금지급 순위 명부 “별지 1호 서식” 을 작성한다.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.

② 삭제 <2014.12.10.>

제10조(성과연봉 지급) ①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성과연봉 지급 평가를 완료하고 2월중에 성과연봉을 지급하며, 상임이사는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지급한다. <개정 2009.4.28., 2013.4.23.>

②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기간 내 근무기간이 4개월 이상인 자는 “별표 1”의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14.12.10.>

③ 성과연봉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9.4.28., 2014.12.10.>

부칙(2007.12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09.4.28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12.2.8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예산 확보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1.16.)

이 세칙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4.23.)

이 세칙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8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14.1.21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14.12.10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세칙 발령 사항은 2015년 지급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.

성과연봉적용대상직원

종 류	적 용 대 상
일반(전문)직 직원	임 직 원

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(상임이사)

경평결과	“가”급	“나”급	“다”급	“라”급	“마”급	“바”급
등 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	E등급
지 급 액	140%	120%	100%	80%	60%	40%

※ 지급액은 월평균 연봉액 기준임.

성과연봉지급등급및지급액표(사무국장, 관장, 소장 및 직원)

지 급 등 급		지 급 액
등급	지급인원	
S등급	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	직급별 월평균연봉의 160퍼센트 이상 해당금액
A등급	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	직급별 월평균연봉의 140퍼센트 이상 해당금액
B등급	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	직급별 월평균연봉의 110퍼센트 이상 해당금액
C등급	평가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자	직급별 월평균연봉의 80퍼센트 이상 해당금액
D등급	1년간 근무성적 평가결과 평균 “가”등급에 해당되는 자	미지급

1. 상임이사는 지급인원을 5퍼센트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이상이어야 한다.

[별표 2] 삭제 <2013.1.16>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9조 관련) <개정 2009.4.28, 2013.1.16>

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

기관명 :

직급 또는 계급 :

순위	소속	직급	성명	근평.목표관리 점수 (환산점수)	기타 (환산점수)	총점	조정 순위